
Policy and Law Report _Vol.106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10.12 ~ 10.17) -

October 18,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고용 노동부	• <u>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u>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며,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 됨. 또한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 ·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광업에서는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음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 3→1개월) ② 사업장 변경자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에서 4년 10개월 근속 시 특례 인정 ③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용자 교육 의무화 등이 있음	2021-10-14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u>「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u>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이 10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관련 △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 인력 양성, △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주요 내용과 그 기대효과는 ① 국가 전체의 데이터 지휘본부(컨트롤 타워) 확립 ②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 등 데이터 전문기업 체계적 육성 ③ 데이터 경제 시대 혁신의 촉진자로서 ‘데이터 거래사’ 양성 ④ 데이터 자산가치와 권리가 보장되는 시장 조성 등이 있음	2021-10-12

부처	내용	일시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의약품 품목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의 의약품 품목갱신 심사 경향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발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일반의약품은 안전관리책임자의 분석·평가자료(부작용 등) 제출 면제 ② 외국 의약품집 수재 현황자료 제출 삭제 ③ 일반의약품의 외국 사용현황 대체자료(임상 문헌 등) 범위 추가 ④ 모든 의약품 전자허가·신고증 등 제출 면제 등이 있음	2021-10-14
금융 위원회	•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함. 이는 '20.5월 발표된 「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 후속조치로서, 자산유동화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기업 자금조달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유동화증권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 확대 (안 제2조제2호) - 유동화 대상자산 및 구조 다양화 (안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 자산유동화 등록절차 간소화 (안 제6조) -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자 자격 정비 (안 제10조, 제11조) - 「자산유동화법」상 인센티브 확대 ② 리스크 관리 강화 -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안 제33조의2, 제42조) - 자산보유자의 위험분담 의무화 (안 제33조의3, 제38조의3 등) 등이 있음	2021-10-12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021.10.14 시행)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8028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 이에 따라,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건부 허가의 내용을 정하는 한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운반차량이나 보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운반차량이나 보관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영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1-10-14
고용노동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21.10.14 시행)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로 확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042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 이에 따라,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 및 사업주의 기준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현행보다 2배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1-10-14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고용 노동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2021.10.14 시행) 사용자나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8037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정하고,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 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21-10-1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21.10.14 시행) 종전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고객 응대근로자에 대해서만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039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지원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021-10-14
국토 교통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10.12 시행) 물류단지에 대한 실수요 검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사업계획서 및 재무제표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 및 시설의 임대 효율을 현실화하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 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1-10-12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국토 교통부	• 「<u>자동차관리법 시행령</u>」(2021.10.14 시행)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침수로 인한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및 2022. 4. 14. 시행)됨 이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비율을 매출액의 100분의 2로 정하는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제작자 등의 원활한 국내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고 촬영이나 전시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1-10-14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②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전부를 누락한 경우에 대한 명령사항 위반 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20만원, 과세자료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대한 명령사항 위반 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 ※ 의견제시기간 : 10/12(화)~10/18(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로 제출	2021-10-12
법무부	•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을 확대하여 기업의 거래 환경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 (안 제8조의2) -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외부감사대상 법인 및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서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 ② 시행시기 및 적용례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의견제시기간 : 10/15(금)~11/24(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법무부(상사법무과)로 제출	2021-10-1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국토 교통부	•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1인 가구의 증가 및 소규모 주거시설의 대안으로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일상화로 주거-오피스 간 경계가 모호해지며 대안주거로서 오피스텔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3인 이상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며, 세대 간 악취 및 담배연기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아파트와 달리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이에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실사용 면적과 유사한 전용면적 120㎡까지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배기설비 설치 시 허가권자가 공동주택과 같은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바닥난방 설치 제한 면적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85㎡에서 120㎡으로 완화 (안 제2조제 3호 개정) ②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배기설비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 적용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조 신설) ※ 의견제시기간 : 10/14(목)~11/3(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로 제출	2021-10-1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판 후 조사 제도 개선 및 의료기기 봉합제도 도입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소의 시설기준 개선 등 법령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시판 후 조사 면제 대상 및 조사계획서 승인 등 (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 법률 위임에 따라, 시판 후 조사 면제대상을 1·2등급 신개발의료기기와 국외 사용경험이 충분한 의료기기로 규정 - 시판 후 조사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시판 후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서 승인을 받도록 함 - 시판 후 조사계획서 승인일로부터 시판 후 조사결과 등을 첨부하여 정기적(최초 1년까지:6개월마다, 1년 이후:1년마다)으로 보고하도록 함 ②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 요건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안 제14조, 제15조, 별표 9, II. 개별기준 및 별지 제11호서식) -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교육기본계획을 제출하고, 교육운영기준 및 교육계획 수립 등을 준수하도록 함 - 거짓·수료증 발급이나 준수사항 위반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 ③ 봉합 의무대상 및 위반 시 처분 등 규정 (안 제45조의4, 별표 8) - 인체에 삽입되거나 접촉되는 의료기기 중에 이물 발생이 많았던 주사기·주사침, 콘택트렌즈, 멸균 의료기기 중에 분할 판매 시 문제가 발생하는 창상피복재 등을 봉합 의료기기로 규정 ④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소 시설기준 등 개선 (안 제26조제1항 및 제3항, 별표2) - 기계·기구·장치·재료 등의 전통적인 의료기기는 제조·수입을 위하여 작업소, 시험실, 창고 등의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원재료 입고, 제조 및 생산, 출고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프로그래밍의 전산화 정보처리를 통하여 무형의 형태로 제조되고 있어 장소적 개념의 시설이 불필요하여 장소적 개념의 시설구비 의무를 탈피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작업소, 시험실, 창고 등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의무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제조 등을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장소와 시설 및 장비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 ※ 의견제시기간 : 10/14(목)~11/23(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로 제출	2021-10-14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1인)」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의 패러다임이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에서 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혁신주도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률이 OECD 33개국 중 27위로 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이 주목받고 있고, 이를 이용한 ICT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기업이 기존 자체시스템(On-premise)을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하거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처리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내국인이 클라우드컴퓨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5 신설, 제144조제1항·제2항)	2021-10-1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2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가상자산과 다른 실물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과세할 예정임 그런데 2021년 5월에서야 가상자산사업자를 신고하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금융상품으로서의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고,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기본 공제하되 3억원 이하에서는 100분의 20,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제5항, 제64조의3제2항, 제84조제3호 및 부칙 제1조제2호 등)	2021-10-1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9인)」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할 경우에 현행법의 사업전환계획 승인 범위는 중소기업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기업 생태계의 다양한 사업전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최근의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맞춘 중소기업의 변화 노력을 승인하고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신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의 승인 및 지원범위를 기존의 업종 내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나 기존 제품·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여, 현장의 중소기업들이 발 빠르게 변화하고자 하는 필요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전환에 필요한 지원사업 확충 및 지원체계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존력을 보다 높이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업전환의 범위에 업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기존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함 (안 제2조) ② 시판 후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5조 신설) ③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거나,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등의 경우에 일괄 승인할 수 있는 공동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도입함 (안 제8조의2 신설) ④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사업 분야 연구개발 지원과 국내외 판로확보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함 (안 제22조의2 및 제29조의2 신설) ⑤ 신사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중소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의3 신설) ⑥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전환 추진과 관련한 행정규제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의4 신설) ⑦ 사업전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 및 승인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의5 신설)	2021- 10-1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 2050년 탄소중립 등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무공해자동차 대중화시대를 조속히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지원, 의무 등 법·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내에 일반자동차 뿐만 아니라 무공해자동차까지 규율하고 있어 법체계가 복잡하고 국민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무공해차 수요 창출과 충전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무공해차 수요 창출, 충전시설 운영, 보조금 관리 등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무공해자동차 정의를 법으로 격상함 (안 제2조) ② 1회 충전주행거리 등 무공해차 성능요건을 마련하고 인증항목으로 규정함 (안 제46조 및 제48조) ③ 보조금 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부정 수급 시 과징금을 부과함 (안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1 신설) ④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의무운영기간을 규정함 (안 제76조의12 신설) ⑤ 공공부문 기관장 차량의 무공해차 우선 구매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민간부문이 무공해차를 우선 구매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76조의17 및 제76조의18 신설) ⑥ 중장기(5년 단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76조의19 신설) ⑦ 무공해차 충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전기충전사업자, 수소판매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함 (안 제76조의20 신설) ⑧ 전기차 충전시설의 정기검사 및 개선의무를 부과함 (안 제76조의21 신설) ⑨ 전기차 충전시설의 민간 운영 위탁근거를 마련함 (안 제87조) ⑩ 보조금 성능평가 관련 부정수급,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실적 및 계획 미제출, 전기차 충전시설 정기검사 등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안 제94조)	2021-10-13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정감사	※ 각 위원회별 국정감사 일정은 링크된 ‘국정감사 종합일정표(ver 10.14)’ 참고 요망 링크		
국회사무처	10/22(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60호 발간	
국회도서관	10/19(화)	현안입법 알리기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10/22(금)	「최신정책정보 : 국내」 제90호 발간 - 최근 주요국 수입구조 변화와 우리 수출국 경쟁력 분석 등	
입법조사처	10/20(수) 16:00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송오식 교수(전남대학교)	온라인
	10/22(금) 14:00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위한 국회 역할 강화 - 이발래 박사(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주중	「이슈와 논점」 -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소속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 • 박희훈 소속변호사 | T. 02-316-7917 | E. hhpark@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